

# 참여보고서 (COMMUNICATION ON ENGAGEMENT, COE)

세계청소년문화재단



시작일 : 2018년 4월 11일

종료일 : 2020년 4월 10일

## 파트 I. 이사장의 지속적인 지지 선언문

세계청소년문화재단은 세계 아동 및 청소년 육성, 발전에 공여하기 위하여 관련 공익사업과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4년 1월 22일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한 이래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4대 분야 10대 원칙에 대한 세계청소년문화재단의 지지를 다시 확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앞으로도 국내 및 저개발 국가의 청소년들이 소외 받지 않고 공정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류공동번영을 위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본 참여보고서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 및 10대 원칙을 지지하기 위한 권고활동을 참고하여 본 기관이 취한 조치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UNGC의 10대 원칙을 적용한 원칙을 통하여 직원들의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고유목적사업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청소년문화재단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핵심가치인 10대 원칙을 앞장서 이행함으로써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정신을 지역사회는 물론 국제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세계청소년문화재단 이사장 강영중



## 파트 II. 실질적 조치\_①인권

### ■ 목적사업 : 대교 MUN 캠프

저개발국가 아이들에게 소통하고 교육과 문화체험을 통해 꿈을 키워 나아가 세계적 리더로 양성하는 프로그램

|       |  |
|-------|--|
| 국가/지역 | ▪ 동남아 등 저개발 국가 대상  |
| 학 생   | ▪ 100명   |
| 프로그램  | <p>① <b>MUN 프로그램 (모의 UN대회)</b><br/>: UN의 역할과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UN기구가 하는 활동을 실제 체험을 통해 배우는 프로그램</p> <p>② <b>글로벌 리더와의 만남</b><br/>: UN 등 국제기구에서 활동 중인 글로벌 리더 초청해 국제 사회에 대해 알아보는 프로그램</p> <p>③ <b>체험 프로그램</b><br/>: 악기 배우기, 야외 체육활동, 팀 빌딩 등 쉽고 즐기면서 배우는 소통 프로그램</p> <p>④ <b>문화체험 프로그램</b><br/>: K-culture 체험, 유적지 탐방 등 참가자들에게 배움이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p> |
| 지원예산  | 2.3억 (연간)  |
| 후원 단체 | 외교부, 연합뉴스  |

### 주제 :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2015년 제 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
- UN의 SDGs를 주제로 하여 청소년들의 참여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됨

## 파트 II. 실질적 조치\_①인권

### ■ 목적사업 : 드림프로젝트

예체능 재능을 가진 다문화 가정 및 사회적 배려계층 자녀들에게  
재능개발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평등을 실천하고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함

|       |   |
|-------|---|
|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을 통한 프로보노 실현</li> <li>창의적인 인재를 차등 없이 발굴 육성</li> </ul>  |
| 지원 금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 30만원</li> </ul>  |
| 지원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상위계층 청소년 (저소득군 및 다문화 가정)</li> </ul>   |
| 지원 학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 중, 고</li> </ul>   |
| 지원 인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 25명 내외</li> </ul>  |
| 기부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눈높이사랑봉사단 매칭 그랜트 자금</li> </ul>  |
| 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재능개발비 : 매월 30만원</li> <li>② 전문멘토링 : 각 분야별 멘토지원, 총 13명</li> <li>③ 감성멘토링 : 봉사단 간사 방문 또는 해피콜</li> <li>④ 드림 캠프 : 재능개발 동기부여를 위한 캠프 연 1회</li> </ul> |
| 지원예산  | 1.1억 (연간)   |

### ■ 분야별 역대 참여 인원

단위 : 명

| 연도        | 합계         | 스포츠        | 미술        | 음악        | 무용        |
|-----------|------------|------------|-----------|-----------|-----------|
| 2012      | 30         | 6          | 16        | 8         | 0         |
| 2013      | 30         | 11         | 10        | 9         | 0         |
| 2014      | 34         | 17         | 7         | 8         | 2         |
| 2015      | 32         | 17         | 4         | 6         | 5         |
| 2016      | 27         | 17         | 4         | 4         | 2         |
| 2017      | 23         | 14         | 3         | 4         | 2         |
| 2018      | 24         | 15         | 3         | 3         | 3         |
| 2019      | 25         | 15         | 4         | 2         | 4         |
| <b>합계</b> | <b>225</b> | <b>112</b> | <b>51</b> | <b>44</b> | <b>18</b> |

## 파트 II. 실질적 조치\_②노동

### ■ 노동원칙 이행을 위한 제도수립

#### 강제노동 배제

##### 제 12 조 (근무시간)

1.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시업시각은 08~12시 사이를 원칙으로 하고, 종업시간은 전 1항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되 계절 및 경영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 19 조 (주 휴일)

##### 제 20 조 (휴일)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휴일로 정하되, 재단의 운영 상 특정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으며, 노동관계법상의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 제 21 조 (연차휴가)

##### 제 22 조 (특별휴가)

##### 제 32 조 (재해보상)

직원이 업무수행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갈음 한다.

##### 제 37 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재단은 임신중인 직원이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부 정기 건강검진을 위한 시간을 요청할 시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시간은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 한다.

#### 차별 철폐

##### 제 38 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차별철폐

1. 재단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한다
2.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파트 II. 실질적 조치\_③환경

### ■ 자연 보호 캠페인

내용

자연보호캠페인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산림청과 연계하여 매년 4월 나무 심기 등의 식목 캠페인을 사랑봉사단 전국 단위로 펼치고 있음



### ■ 하천정화 캠페인

내용

7~8월 하천정화 캠페인으로 하천의 오염 물질을 분해하는 EM 흙공 던지기 활동을 통해 깨끗한 하천을 만드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음



## 파트 II. 실질적 조치\_④ 반부패

### ■ 내외부 감사실시

#### 내 용

재단은 자발적인 내부 감사와 운영의 객관성을 위한 외부감사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무관청에 대한 올바른 신고 및 보고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세계청소년문화재단의 윤리강령 수립

1. 재단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을 통한 신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공익을 실현한다.
2. 외부기관으로부터 금품수수, 향응접대 등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부정직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재단의 자산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4. 투명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직원간의 차별대우, 파벌조성, 부당한 청탁 등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5. 업무 수행 중 일어나는 내용이나 정보를 부정직하게 지연시키거나 왜곡하여 재단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파트 II. 실질적 조치\_④ 반부패

### ■ 내외부 감사실시 (공익법인 법률 준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의]

-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확인 항목, 세무확인의 절차·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 ③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